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임직원 행동강령 미준수(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 속 기 관] 부천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부천시체육회는 「정관」 제50조(사무국 직제 등)에 따라 부천시체육회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행동강령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동강령 부칙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9조의 개정강령은 이 행동강령 시행 이후(****. **. **.)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천시체육회의 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따른 것으로, 해당 표준안은 ****년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호(일부개

정)」를 통해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부천시체육회는 ****. *. *. 행동강령을 제정 한 후 별도의 개정을 거치지 않아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다가, ****. *. **. 법정법인화에 따른 행동강령 제정 후 ****. **. **. 개정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비록 감사기간내 행동강령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부천시체육회가 그 근거가 되는 상위 지침을 반영 하지 않은 이유기에, 임직원 소속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부천시체육회는 ****년부터 ****년까지 ○○○ 등 *명의 임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 **, ***,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세부내역 [붙임] 참고

[조치사항]

부천시체육회장은 행동강령 제9조를 준수하여 임직원의 소유 회사(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소유한 회사 포함)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계약 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부천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부천시체육회는 「정관」과 「부천시체육회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회계처리 및 계약체결을 하고 있다.

가. ****년도 ○○○○○○○○○○ ○○용품 분할구매 건

부천시체육회는 ****년도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를 통해 ○○○○○○을 공모하여 선정결과[대외협력파트-****(**.**.*)]를 통보 받아 부천시 ○○종목 학교운동부 해외훈련지원을 예정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상반기 사업 진행이 불가하여 본회를 통해 ○○종목 학교운동부 용품지원으로 사업변경[사업지원부-****(**.**.*)] 승인[대외협력파트-****(**.**.*)]을 받아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본회는 부천시체육회의 보조금 신청[사업지원부-****(**.**.*)]을 받아 교부[대외협력파트-****(**.**.*)]하였고 부천 지역내 4개 학교(○○초, ○○초, ○○초, ○○고) 학교운동부에 ○○용품(○○○○, ○○)을 지원하면서 보조금 **,***천원을 계약 없이 *개 업체를 통해 구매하였다.

나. 물품 구매 등 계약서 작성 미이행

부천시체육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물품구매를 진행하였으며, ****년 ○○○○○○와 ****년 ○○○ ○○○○○○○○를 비롯한 여러 사업에서 [표]와 같이 다수의 물품 구매를 계약서 없이 운영되었다.

[표] 물품구매내역

사업명	거래일	결제방법	재원	금액
**** ○○○○○○ (○○○○)	**.**.**	계좌이체	도비	*,***,***
**** ○○○○○○○○○○○○○ (○○ *○)	**.**.**	계좌이체	국비	*,***,***
**** ○○○ ○○○○○○ (○○○ ○○○)	**.**.**	계좌이체	국비	*,***,***
**** ○○○ ○○○○○○ (○○○)	**.**.**	계좌이체	국비	*,***,***
**** ○○○ ○○○○○○ (○○○)	**.**.**	계좌이체	국비	*,***,***
**** ○○○○○○○○○○○○○ (○○)	**.**.**	계좌이체	도비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회계규정」 제34조(계약방법과 준용)에 따르면 계약절차 등을 이행해야하며,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여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및 계약체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년도 ○○○○○○○○○○○ ○○용품 분할구매 건

「회계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경기도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5호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물품 구매 등 계약서 작성 미이행

「회계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2백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또는 인터넷을 통해 2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서를 생략하는 대신 절차에 맞게 지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부천시체육회 종합감사 기간 중 국·도비 보조금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러 사업에서 물품구매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할 구매거래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가. ****년도 ○○○○○○○○○ ○○용품 분할구매 건

부천시체육회는 사업기간내(**월~**월) 보조금을 교부(**월**일) 받아 공개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총 *개 업체의 용품을 분할하여 계약서 없이 지출하였다.

보조금 사업에서 물품 구매 및 용역을 선정할 시에는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2천만원 초과할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관리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 물품 구매 등 계약서 작성 미이행

부천시체육회는 물품을 구매하는 보조금 사업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없이 물품구매가 발견되었고 2백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청 령 감 사 의 견]

가. 사업기간 내 용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진행된 분할구매는 규정을 회피하는 행위이며 필요한 절차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나. 물품구매 등에 따른 계약서 미작성은 회계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출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조 치 사 항]

부천시체육회장은 「회계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서 물품구매 및 용역에 계약관련 회계처리가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체육회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경영공시 미이행

[소 속 기 관] 부천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부천시체육회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 및 자체 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관」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부천시체육회 「정관」 제55조(경영공시)에 의하면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시 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 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부천시체육회장이 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천시체육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관」에 명시된 공시항목들을 게재 및 공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부천시체육회는 ****년 *월 **일까지 부천시체육회의 홈페이지

지 내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와 부천시체육회장 및 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만 공개하였을 뿐,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인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천시체육회는 ****년 부천시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경영공시 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조 치 사 항]

부천시체육회장은 「정관」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